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고시 제2007-68호, 2007.2.26)”이 지난 2월 26일과 4월 16일(각 부처의 명칭 변경에 따라 명칭 변경) 개정되었습니다.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은 지난 2005년 처음 제정된 이후 2007년 대폭 개정되었고, 지난 2월 27일 개정된 고시는 현실에 맞도록 보완된 것입니다.

본지는 회원사의 건설기술인력 관리에 따른 이해를 돕기 위해 신·구조문 대비표를 게재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2장 건설기술 관련학과의 범위</p> <p>제3조(학력·교육기관 인정범위) 영 제4조 별표 1 및 제51조의2 별표 3에 의한 건설기술인력의 학력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건설기술관련 박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p> <p>가. 국내 대학원에서 건설기술관련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자</p> <p>나. 그 밖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p> <p>2. 건설기술관련 석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p> <p>가. 국내 대학원에서 건설기술관련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p>	<p>제2장 건설기술 관련학과의 범위</p> <p>제3조(학력·교육기관 인정범위) 영 제4조 별표 1 및 제51조의2 별표 3에 의한 건설기술인력의 학력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건설기술관련 박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p> <p>가. 국내 대학원에서 건설기술관련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자</p> <p>나. 그 밖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p> <p>2. 건설기술관련 석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p> <p>가. 국내 대학원에서 건설기술관련학과 교육과정을</p>

현 행	개 정
<p>나. 그 밖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p> <p>3. 건설기술관련 학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p> <p>가. 국내 대학에서 건설기술관련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자</p> <p>나.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자</p> <p>다.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과학기술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자</p> <p>라.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자</p> <p>마. 그 밖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p> <p>4. 건설기술관련 전문대학 졸업학력으로 인정하는 자</p> <p>가. 국내 전문대학(5년제 고등전문학교 포함)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p> <p>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만, 건설기술관련 학과에 편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p> <p>다. 그 밖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p> <p>5. 건설기술관련 고등학교졸업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p> <p>가. 국내 고등학교의 건설기술관련학과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p> <p>나. 그 밖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p> <p>6.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p> <p>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관련규정에 의한 학위과정에 한한다)</p> <p>나.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병과·시설병과·측량</p>	<p>이수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p> <p>나. 그 밖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p> <p>3. 건설기술관련 학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p> <p>가. 국내 대학에서 건설기술관련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자</p> <p>나.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자</p> <p>다.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과학기술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자</p> <p>라.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자</p> <p>마. 그 밖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p> <p>4. 건설기술관련 전문대학 졸업학력으로 인정하는 자</p> <p>가. 국내 전문대학(5년제 고등전문학교 포함)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p> <p>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만, 건설기술관련 학과에 편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p> <p>다. 그 밖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p> <p>5. 건설기술관련 고등학교졸업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p> <p>가. 국내 고등학교의 건설기술관련학과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p> <p>나. 그 밖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p> <p>6.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p> <p>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관련규정에 의한 학위과정에 한한다)</p> <p>나.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병과·시설병과·</p>

현 행	개 정
<p>또는 측지분야 병과 교육기관 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p> <p>〈신설〉 〈신설〉</p> <p>제4조(건설기술관련학과의 범위 등) 영 제4조 별표 1 및 제51조의2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해당 건설기술관련학 과(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p> <p>제5조(건설기술관련학과의 인정신청) ①제4조 별표 1 비 고 제3호에 의한 건설기술관련학과 인정을 신청하는 자 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술관련학과 심의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건설기술관련학과로 인정 받고자 하는 학과의 졸업증 명서 및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2. 제1호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② 수탁기관은 건설기술관련학과 심의에 있어 제15조 규 정의 경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u>의견을</u> <u>들 수 있다.</u> ③ 수탁기관은 제1항의 건설기술관련학과 인정신청이 있는 경우 건설기술관련학과 심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결과를 타 수 탁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를 통보 받은 수 탁기관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등</p> <p>제6조(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①규칙 제4조의2제1항제5</p>	<p>측량 또는 측지분야 병과 교육기관 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p> <p>마.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u>고등기술학교</u> 바. 종전의 「국립 철도고등학교 설치령」에 의한 철 도고등학교 부설 전수부 또는 전문부</p> <p>제4조(건설기술관련학과의 범위 등) 영 제4조 별표 1 및 제51조의2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해당 건설기술 관련학과(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p> <p>제5조(건설기술관련학과의 인정신청) ①제4조 별표 1 비고 제3호에 의한 건설기술관련학과 인정을 신청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술관련학과 심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 야 한다.</p> <p>1. 건설기술관련학과로 인정 받고자 하는 학과의 졸업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2. 제1호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② 수탁기관은 건설기술관련학과 심의에 있어 제15조 규정의 경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u>의견</u> <u>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u> ③ 수탁기관은 제1항의 건설기술관련학과 인정신청이 있는 경우 건설기술관련학과 심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결과를 타 수탁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를 통보 받 은 수탁기관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등</p> <p>제6조(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①규칙 제4조의2제1항</p>

현 행	개 정
<p>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p> <p>1.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어느 하나로 한다.(2005년 7월 1일 이후에 근무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p> <p>가.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의 처리내역서(통합전자문서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된 개인이력조회 출력물을 포함한다)</p> <p>나.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p> <p>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가 발행한 것에 한한다)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p> <p>제8조(외국의 자격·학력·경력 등 인정) ①외국에서 취득한 자격·학력 또는 경력을 영 별표 1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자(제7조의 외국인을 포함한다)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변경신고서에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만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국가의 교육관련 부서에서 발행한 확인서(학교명, 학과명, 학위, 전공분야 등이 표기된 것에 한한다)를 제출한 경우 제4호의 외국의 건설관련 학위·자격·경력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p> <p>1. 졸업증명서 또는 기타 학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p>	<p>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p> <p>1.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어느 하나로 한다.(2005년 7월 1일 이후에 근무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p> <p>가.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관리기관에 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출력물 중 어느 하나(사본을 포함한다)</p> <p>나.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p> <p>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가 발행한 것에 한한다)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p> <p>제8조(외국의 자격·학력·경력 등 인정) ①외국에서 취득한 자격·학력 또는 수행한 경력을 영 별표 1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자(제7조의 외국인을 포함한다)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학력</p> <p>가. 당해 국가의 교육관련 부서에서 발행한 확인서(학교명, 학과명, 학위, 전공분야 등이 표기된 것으로 한국어로 발행된 것에 한한다)</p> <p>나.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졸업증명서 또는 기타 학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된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의 건설관련 학위·자격·경력 확인서(주재국 한국 영사 이상 또는 주한 대사관의 영사 이상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이하 “영사 확인서”라 한다)</p> <p>다.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의해 발행한 APOSTILLE</p>

현 행	개 정
<p>2. 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p> <p>3. 외국 회사(외국의 법령에 의해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력확인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하며 제11조 별표 2 제4호의 분야 및 제5호나목의 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서류를 말한다)</p> <p>4.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의 건설관련 학위·자격·경력 확인서(주재국 한국 영사 이상 또는 주한 대사관의 영사 이상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p> <p>5. 제7조 규정의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139호서식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11호서식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p> <p>② 국내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가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경우 제1항제4호의 외국의 건설관련 학위·자격·경력 확인</p>	<p>확인서(한국어로 번역된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하며 이하 “아포스티유 확인서”라 한다)</p> <p>2. 자격</p> <p>가.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자격증 사본이 첨부된 영사 확인서</p> <p>나. 「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 규정에 의해 국가간 협약 등에 의하여 기술자격이 상호인정된 국가가 발행한 아포스티유 확인서</p> <p>3. 경력</p> <p>가.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외국 회사(외국의 법령에 의해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의 경력확인 증빙서류(제11조 별표 2 제4호의 분야 및 제5호나목의 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것에 한하며 이하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라 한다)가 첨부된 영사 확인서</p> <p>나.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p> <p>4. 제7조 규정의 외국인인 경우</p> <p>가.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139호서식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p> <p>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11호서식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원</p> <p>5. 삭제</p> <p>② 국내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가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경우 제1항제1호나목의 영사 확인서는 국내에서</p>

현 행	개 정
<p>서는 국내에서 졸업한 학교의 학과장 이상의 교수가 확인한 것 또는 당해 국가의 교육관련 부서에서 발행한 확인서(학교명, 학과명, 학위, 전공분야 등이 표기된 것에 한한다)로 갈음할 수 있다.</p> <p>③ 제7조 규정의 외국인의 경력신고 접수 또는 증명서 발급 업무는 제1항제5호에 의하여 제출된 증명원의 체류기간 내에 한하며 체류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확인되는 제1항제5호의 증명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9조(자료의 보관 등) ①수탁기관은 건설기술인력의 신고 자료를 광디스크 등에 저장·보관하여야 한다.</p> <p>② 수탁기관은 광디스크 등에 저장한 신고자료를 일정한 기간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p>	<p>졸업한 학교의 학과장 이상의 교수가 확인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p> <p>③ 제7조 규정의 외국인의 경력신고 접수 또는 증명서 발급 업무는 제1항제4호에 의하여 제출된 증명원의 체류기간 내에 한하며 체류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확인되는 제1항제5호의 증명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9조(자료의 보관 등) ①수탁기관은 건설기술인력의 신고 자료를 광디스크 등에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류에 대하여는 광디스크 등에 저장하지 아니하고 접수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p> <p>②수탁기관은 광디스크 등에 저장한 신고자료를 일정한 기간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증명서발급 절차 및 기준</p> <p>제16조(증명서 신청 등) ① 법 제6조의2제4항 및 규칙 제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술자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신청서를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자 본인이 직접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 제출을 아니할 수 있다.</p> <p>②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관련법령의 사업수행능력 또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평가를 위해 해당 업체에서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발급할 수 있다. 다만, 2005년 7월 1일 이후 참여한 설계 등 기술용역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 확인의 경력확인서 또는 발주청이 확인한 분야별 참여기술기술자 명단(“건설기술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증명서발급 절차 및 기준</p> <p>제16조(증명서 신청 등) ① 법 제6조의2제4항 및 규칙 제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술자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신청서를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자 본인이 직접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 제출을 아니할 수 있다.</p> <p>②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관련법령의 사업수행능력 또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평가를 위해 해당 업체에서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발급할 수 있다. 다만, 2005년 7월 1일 이후 참여한 설계 등 기술용역,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 등의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기술용역 등을 직접 발주한 발주</p>

현 행	개 정
<p>제42조에 의한 별지 제19호 서식, 사본일 경우 발주청장 원본대조필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으로, 시공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u>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재정경제부 또는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규정에 의한 증명서 등을 말한다) 로 확인하여야 한다.</u></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할 경우 기술경력 중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등 일부 경력을 확인·발급할 수 있다.</p> <p>④ 건설기술자보유/경력증명서 신청은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 신청은 우편으로 할 수 있다.</p> <p>제18조(수령하지 않은 증명서 처리 등) ①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신청인이 신청하여 발급되었으나 수령하지 않은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참여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는 발급일부부터 30일, 건설기술경력증은 1년이 경과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갱신, 재발급, 타 경력관리수탁기관으로 이관 등 반납 받은 건설기술경력증은 1월 이내에 폐기할 수 있다.</p> <p>②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반납 받아 폐기하는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업무정지 등으로 반납 받은 건설기술경력증에 대하여 효력상실공고를 홈페이지 등에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p> <p>제19조(교육훈련의 통보) ①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u>소관</u> 건설기술자에게 통지·안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통지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건설기술인력교육훈련운영지침 제6조에 의한다.</p>	<p>청 확인의 경력확인서 또는 발주청이 확인한 분야별 참여기술기술자 명단(“건설기술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42조에 의한 별지 제19호 서식, 사본일 경우 발주청장 원본대조필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으로, 시공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u>기획재정부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규정에 의한 증명서 등을 말한다</u>) 로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할 경우 기술경력 중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등 일부 경력을 확인·발급할 수 있다.</p> <p>④ 건설기술자보유/경력증명서 신청은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 신청은 우편으로 할 수 있다.</p> <p>제18조(증명서의 보관 및 폐 처리 등) ①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신청인이 신청하여 발급되었으나 수령하지 않은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참여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는 발급일부부터 30일, 건설기술경력증은 1년이 경과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갱신, 재발급, 타 경력관리수탁기관으로 이관 등 반납 받은 건설기술경력증은 1월 이내에 폐기할 수 있다.</p> <p>②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의 단서 사유가 발생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이 통보된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경력증에 대하여 효력상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p> <p>제19조(교육훈련의 통보) ①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u>해당</u> 건설기술자에게 통지·안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통지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건설기술인력교육훈련운영지침 제6조에 의한다.</p>

현 행	개 정
<p>제21조(경력의 구분) ①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영 제7조의2제1항 및 규칙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 등과 회사로부터 감리원의 경력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받아 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감리원관리원부를 작성하여 전산 관리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경력은 제20조제1항의 발주청 등으로부터 통보된 감리경력 과 그 외의 기타 건설관련업무 수행경력(이를 “기타경력”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다.</p> <p>② 기타경력은 회사에서 다음 어느 하나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신고서에 의하여 관리하며, 이미 기록된 경력의 <u>정정 또는 누락된 경력사항의 추가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에 관하여 당초의 확인자(누락의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확인자)로부터 정정 발급받은 서류에 대해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변경기록하고, 이에 의하여 변경기록한 내용은 다시 정정할 수 없다.</u></p> <p>제23조(감리원의 변경등록) ①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감리전문회사(이하 이 장에서 “회사”라 한다)로부터 감리원에 대한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감리원변경등록신고서를 접수받아 등록 또는 등록상실 조치하고 신고서 접수일로 전산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감리원경력확인서 발급시 감리경력란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p> <p>②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감리원의 퇴직으로 인한 변경등록 신고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변경등록 처리 후 당해 감리원이 감리용역을 수행중인 경우 감리용역의 발주청 등에 이 사실을 알리고 기타경력사항은 소속회사에 이를 통보한다.</p> <p>③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종전에 소속되었던 회사로부터 퇴직신고 서류가 접수되기 이전에 새로이 입사한 회사로부터 동일 감리원에 대한 입사신고 서류가 접수된 경우에는 종전에 소속되었던 회사의 퇴직증명서류에 의하여 각각의 회사에 대한 변경등록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21조(경력의 구분) ①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영 제7조의2제1항 및 규칙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 등과 회사로부터 감리원의 경력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받아 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감리원관리원부를 작성하여 전산 관리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경력은 제20조제1항의 발주청 등으로부터 통보된 감리경력과 그 외의 기타 건설관련업무 수행경력(이를 “기타경력”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다.</p> <p>② 기타경력은 회사에서 다음 어느 하나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신고서에 의하여 관리하며, 이미 기록된 경력의 <u>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에 관하여 당초의 확인자로부터 정정 발급받은 서류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발주청 또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른 정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제23조(감리원의 변경등록) ①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감리전문회사(이하 이 장에서 “회사”라 한다)로부터 감리원 등록사항 변경증명서류(제6조제1항 제1호의 서류를 포함한다)가 첨부된 감리원변경등록 신고서를 접수받아 등록 또는 등록상실 조치하고, 그 등록사항을 감리원경력확인서 발급시 감리경력란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p> <p>② 감리원의 퇴직신청에 대하여 소속회사가 경력확인서 등 퇴직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6조제5항에서 정한 서류를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 퇴직을 신고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감리원이 제출한 퇴직신고사항을 접수한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당해 감리원의 소속 회사에 퇴직처리를 예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그 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당해 감리원에 대한 변경등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p>④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변경등록 신고기한의 경과 또는 등록기준에 미달(휴업기간중인 회사를 포함한다) 하는 회사에 대한 현황을 당해 회사와 당해 회사를 관할 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3항에 의한 감리원의 퇴직처리 예고에도 불구하고 소속회사가 감리원변경등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해지의 효력이 생긴 날을 퇴직일로 하여 퇴직처리하고, 이를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회사가 감리원 변경등록을 신고한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기술인력이 법 제28조의3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결격사유 및 「부패방지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신원조회를 의뢰 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감리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⑤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처리한 후 당해 감리원이 감리용역을 수행중인 경우 감리용역의 발주청 등에 이 사실을 알리고 기타경력사항은 소속회사에 이를 통보한다.</p>
<p>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된 감리원에 대한 입사·퇴사일자의 정정은 지방노동사무소 등 관계 행정기관의 사실 입증서류 기타 명백한 자료에 의한다.</p>	<p>⑥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종전에 소속되었던 회사로부터 퇴직신고 서류가 접수되기 이전에 새로이 입사한 회사로부터 동일 감리원에 대한 입사신고 서류가 접수된 경우에는 종전에 소속되었던 회사의 퇴직증명서류에 의하여 각각의 회사에 대한 변경등록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감리원의 근무기간을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p>
<p><신설></p>	<p>⑦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변경등록 신고기한의 경과 또는 등록기준에 미달(휴업기간중인 회사를 포함한다)하는 회사에 대한 현황을 당해 회사와 당해 회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신설></p>	<p>⑧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회사가 감리원 변경등록을 신고한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기술인력이 법 제28조의3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규정에 의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신원조회를 의뢰 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감리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신설></p>	<p>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된 감리원에 대한 입사·퇴사일자의 정정은 지방노동사무소 등 관계 행정기관의 사실 입증서류 기타 명백한 자료에 의한다.</p>

현 행	개 정
<p>제24조(학력·경력자인 감리원의 수석감리사 인정방법)</p> <p>① 학력 및 경력에 의해 수석감리사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이하 이호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경력심사를 받아야 한다.</p> <p>② 수탁기관은 경력심사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경력심사반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p> <p>③ 경력심사시에는 해당감리원의 학력 및 경력사항 등이 수석감리사의 자격기준에 적합여부를 심사한다.</p> <p>④ 수탁기관은 경력심사 결과를 감리원에게 개별 통보하고, 수석감리사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감리원은 감리원관리원 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수탁기관은 경력심사반 구성, 경력심사계획 공고, 학력 및 경력의 확인방법·절차, 수수료 등 경력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24조 삭제</p>
<p>제27조(상훈사항) ①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회사, 발주청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회사 또는 감리원에 대한 상훈사실을 신고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전산 등재하여 관리하며,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관련 확인서의 상훈사항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p> <p>②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상훈사실을 신고받은 때에는 수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에 의하여 상훈일자, 수상자, 상훈의 종류, 상훈기관, 공적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수상자가 회사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이를 당해 회사의 상훈으로서 감리용역수행현황의 상훈란에 기록한다. 다만, 감리업무 수행당시 그 대표자가 소속 감리원으로 배치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회사가 그 대표자에 대한 상훈란에 기록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회사의 상훈란 대신 감리원경력사항의 상훈란에 기록할 수 있다.</p>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된 상훈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기록 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27조(상훈사항) ①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회사, 발주청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회사 또는 감리원에 대한 상훈사실을 신고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전산 등재하여 관리하며,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관련 확인서의 상훈사항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p> <p>②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상훈사실을 신고받은 때에는 수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에 의하여 상훈일자, 수상자, 상훈의 종류, 상훈기관, 공적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삭제</p> <p>④ 삭제</p>

부 칙(제정 2005. 8. 5.)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인정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제14조 및 제16조에 의하여 인정받은 건설기술 관련학과, 경력 또는 기술등급은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경력관리를 위한 사항의 폐지)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정한 경력관리 세부사항은 2005년 10월 1일자로 모두 폐지한다.

부 칙(개정 2007. 2. 2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관련학과의 인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이하 이 부칙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임의신고자 중 종전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관련학과를 졸업한 자가 건설기술관련학과 인정신청을 하지 않아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당해 임의신고자를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 본다.

제3조(건설기술자 직무 및 전문분야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까지의 건설기술자 신고경력(2007년 8월 31일 이전에 수탁기관에 신고한 경력을 말한다) 중 미신고된 직무 및 전문분야를 신고할 경우 직무 및 전문분야 등급인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건설기술자 전문분야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건설기술자 전문분야 중 “생산기

계”는 개정규정에 의한 “컴퓨터응용가공”으로, “공업계측제어”는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계측제어”로, “건설재료시험”은 개정규정에 의한 “토목품질시험”으로, “소방설비”는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으로, “공정관리”는 개정규정에 의한 “품질관리”로, “방직”은 개정규정에 의한 “섬유물리” 또는 “섬유화학”으로 본다.

제5조(신고된 자료의 경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까지의 건설기술자 신고경력(근무처 및 기술경력 등을 말하며 2007년 8월 31일 이전에 신고한 것에 한한다)이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 변동된 신고경력 및 기술등급을 종전규정에 의한 신고경력 및 기술등급으로 인정한다.

부 칙(개정 2008. 2. 2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원의 직무분야 경력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후 감리전문회사가 소속 감리원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 전까지의 경력 및 학력 등을 2008년 8월 31일까지 신고(정정신고를 포함한다)할 경우 직무분야의 등급인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학력·경력자인 감리원의 수석감리사 인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영 부칙 제7조와 종전 규정 제24조에 따라 학력 및 경력에 의해 수석감리사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실시하는 경력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과 관련하여 2009년 6월 30일까지 종전 고시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경력심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별표 1]

건설기술관련학과의 범위(제4조 관련)

직무분야	건 설 기 술 관 련 학 과
기 계	기계관련학과, 계측관련학과, 냉동관련학과, 용접관련학과, 배관관련학과, 선박관련학과, 조선관련학과, 자동차관련학과, 금형관련학과, 기관관련학과, 항공관련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생산자동화공학과, 시스템공학과, 기계기관공학과, 제조공학과, 공업교육학과(기계), 배관용접과, 금형공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금 속	금속관련학과
전 기	전기 또는 전력관련학과
전 자	전자관련학과
토 목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지 또는 측량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지질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건 축	건축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건축), 농업교육학과(건축), 공업교육학과(건축), 이학과(건축), 공학연구과(건축), 실내디자인과, 실내장식과, 산업공학과(건축), 건축물관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광업자원	자원관련학과, 광산관련학과
국토개발	도시 또는 지역관련학과, 국토관련학과, 개발관련학과, 원예관련학과, 조경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환경녹지학과, 산림자원학과, 임학과, 산림자원보호학과, 임업과, 지적학과
안전관리	산업 또는 안전관련학과, 공업경영학과
환 경	환경관련학과, 대기관련학과
산업응용	산업 또는 응용관련학과
교 통	교통 또는 항공관련학과
화공 및 세라믹	화공관련학과, 화학관련학과
섬 유	섬유관련학과
기 타 (감리원에 한해적용)	화학관련학과, 요업관련학과, 재료공학과, 무기재료공학과, 세라믹공학과, 통신관련학과, 정보관련학과, 전산관련학과, 에너지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전파공학과, 원자력공학과, 원자핵공학과
비 고	1. 위 표의 건설기술관련학과는 교육인적자원부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임. 2. 위 표에서 00관련학과라함은 00과, 00학과, 00공학과, 00학부 또는 00전공 등을 말한다. 3. 학과의 신설, 대체 등으로 인하여 위 표에 해당되지 않는 학과에 대하여는 당해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감안,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건설기술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기술관련 교과목의 이수학점이 교양과목을 제외한 총 교과목(복수·연계·다전공 등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복수·연계·다전공 등 교과목을 말한다) 이수학점의 50%이상이어야 한다.(단, 고등 학교는 배점시간을 학점으로 처리한다)

[별표 2]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제11조관련)

1. 건설기술인력의 분야 및 등급구분(전문분야에 관한 사항은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의 관리업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건설기술인력의 분야(직무 및 전문분야)구분은 건설기술인력이 졸업하거나 이수한 건설기술관련학과, 영 별표 1 제3호 규정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종목 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에 참여한 경력에 따라 제4호 규정의 직무분야와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인정한다.
 - 나.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인정은 해당 건설기술자의 건설기술자경력신고서 또는 건설기술자경력 변경신고서를 접수처리한 시점으로 한다.
2. 직무분야의 경력산정방법
 - 가. 직무분야의 경력산정은 건설기술인력이 실제 수행한 건설공사업무 기간 중 제4호 규정의 각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경력을 각 직무분야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경력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은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은 제외한다.
 - 나.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에 대한 경력산정기준은 제5호에 의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기준에 의한다.
 - 다. 건설기술인력이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와 당해 건설기술인력이 졸업하거나 이수한 건설기술관련학과의 직무분야 또는 영 별표 1 제3호 규정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종목 직무분야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의 경력기간(영 별표 1 또는 별표 3에 의한 초급기술자 또는 감리사보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충족한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제3호다목에서 같다) 중에서 5년을 제외한 날부터 건설기술자는 초급으로, 감리원은 감리사보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 라. 일정 기간 내에 서로 상이한 직무분야의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전문분야의 경력산정방법
 - 가. 전문분야의 경력산정은 건설기술자가 실제 수행한 건설공사업무(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 기간 중 제4호의 각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경력을 각 전문분야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경력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은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은 제외한다.
 - 나.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에 대한 경력산정기준은 제5호 건설기술자의 경력인정기준에 의한다.
 - 다.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직무분야가 건설기술자가 졸업하거나 이수한 건설기술관련학과의 직무분야 또는 영 별표 1 제3호 규정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종목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경력기간 중에서 5년을 제외한 날부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 라. 건설기술자가 영 별표 1 제3호 규정의 기술사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직무분야가 같으나 취득한 기술사 종목과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초급으로, 당해 전문분야의 경력기간 중에서 4년을 제외한 날부터 중급으로, 7년을 제외한 날부터 고급까지만 인정한다.
- 마. 일정 기간 내에 서로 상이한 전문분야의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4.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건설기술인력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는 다음 표와 같다.

직무분야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1. 기계	1. 일반기계 2. 컴퓨터응용가공 3. 공조냉동기계 4. 건설기계 5. 용접 6. 건축설비 7. 건축기계설비	7. 광업자원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광산, 광산보안, 석재 통합) 3. 지하수 (2007년 2월 28일까지 인정)	
2. 금속	1. 비파괴검사			
3. 전기	1. 철도신호 2. 건축전기설비	8. 국토개발	1. 도시계획 2. 조경 3. 지적 4. 지질 및 지반 5. 응용지질	
4. 전자	1. 산업계측제어			
5. 토목	1. 토질 및 기초 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 4. 도로 및 공항 5. 철도 6. 철도보선 7. 수자원개발 8. 상하수도 9. 농어업토목 10. 토목시공 11. 토목품질시험 (※건설재료시험 통합) 12.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3. 콘크리트			9. 안전관리
	6. 건축	1. 건축구조 2. 건축설비 3. 건축기계설비 4. 건축시공 5. 실내건축 6. 건축품질시험	10. 환경	1. 대기관리 2. 대기환경 3. 수질관리 4. 수질환경 5. 소음진동 6. 폐기물처리
			11. 산업응용	1. 공장관리 2. 승강기 3. 품질관리 (※품질경영통합)
			12. 교통	1. 교통
			13. 화공및세라믹	1. 화공
			14. 섬유	1. 섬유물리 2. 섬유화학

5.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기준

가. 근무분야별 경력인정기준

경 령 구 분	환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관련업체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발주청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공병병과·시설병과 또는 측량분야 병과의 군복무한 경력 ○ 기타 건설관련단체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기타 건설관련법령에 의해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관련분야의 교직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고등학교 이상의 교사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병과, 시설병과 또는 측량분야 병과 등의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의 교관 •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임용된 조교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학점인정학원의 교사 ○ 건설관련업체 외의 법인체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기술자격, 건설기술관련 학력취득이전 또는 제3조제6호의 교육기관에서 수료 이전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자(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또는 자영업자에 소속되어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60%

나. 영 별표1 및 영 별표3에 의한 건설공사업무는 다음 표와 같다

건 설 공 사 업 무		
1. 계 획	10. 공사감독	18. 유지관리
2. 조 사	11. 시 험	19. 시설물철거
3. 측 량	12. 검 사	20. 건설장비 시운전
4. 연 구	13. 안전점검	21. 사업관리
5. 건설기술정보처리	14. 정밀안전진단	22. 자재의 구매 및 조달
6. 설 계	15. 감리(건축법) 상주/비상주	23. 공사견적
7. 설계감리	16. 감리(주택법) 상주/비상주	24. 시공관리책임자
8. 설계용역감독	17. 감리(건설기술관리법) 책임/시공/검측 : 상주/비상주	25. 현장대리인
9. 시 공		26. 안전관리자

건 설 공 사 업 무		
27. 환경관리자	29. 화약관리자	31. 건설사업관리
28. 품질관리자	30. 강의	32. 기타
〈비고〉 기타분야의 경우 구체적인 공사업무를 표기한다.		

다. 건설공사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1) 건설공사의 종류

건 설 공 사 업 무			
대 분 류		소 분 류	
1. 도로	2. 고속국도	1. 토 공	2. 미장, 방수
3. 국 도		3. 석 공	4. 도 장
4. 교 량 [일반교량, 장대교량(100m이상)]		5. 조 직	6. 비계·구조물해체
5. 공 항	6. 댐	7. 창 호	8. 지붕·판금
7. 간척·매립	8. 단지조성	9. 철근·콘크리트	10. 철 물
9. 택지개발	10. 농지개발	11. 기계설비	12. 상·하수도설비
11. 항만관개수로 [항만, 관개수로]		13. 보링·그라우팅	14. 철도·궤도
12. 철도 [철도노반시설, 철도궤도시설]		15. 포 장	16. 수 중
13. 지 하 철	14. 터 널	17. 조정식재	18. 조정시설물설치
15. 발 전 소	16. 쓰레기소각시설	19. 건축물조립	20. 강구조물
17. 폐수종말처리시설	18. 하수종말처리시설	21. 온실설치	22. 철강재설치
19. 산업시설	20. 환경시설	23. 삭도설치	24. 승강기설치
21. 저장·비축시설	22. 준 설	25. 가스시설시공	
23. 상수도시설[상수도, 정수장]		26. 특정열 사용 기자재시공	
24. 하 수 도	25. 공용청사	27. 온돌시공	28. 시설물유지관리
26. 송 전	27. 변 전	29. 화약관리(발파)	30. 소방설비
28. 하천 [하천정비(지방 / 국가)]		31. 기 타	
29. 통신·전력구	30. 기 타		
〈비고〉 1. 대분류 및 소분류의 기타 공사종류의 경우 구체적인 종류를 표기하며 감리용역계약현황 및 감리원 경력관리에 대하여는 소분류를 적용하지 않는다.			

2) 건축물의 용도분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조의4관련)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다.